

1. 개정이유

「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지무요원 복무관리 규정」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의거 「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지무요원 복무관리 규정」의 유효기간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유효기간을 2026년 4월 2일로 변경하여 개정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 의 :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협의 완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국토교통부훈령 제0000호

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
일부개정안

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2023년 4월 2일”을 “2026년 4월 2일”로 한다.

부 칙<제0000호,2023.00.00.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유효기간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<u>2023년 4월 2일</u> 까지로 한다.	제15조(유효기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 <u>2026년 4월 2일</u> -----.